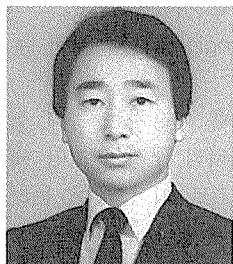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구제제도



윤 수 영

상공부 무역조사실 조사총괄과 행정사무관

1. 서 론

가. 수입관리제도와 산업피해구제제도

- 수입의 증가는 그것이 공정거래인지 불공정거래인지를 막론하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그러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수단은 국가별로 발전의 정도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는 바,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 등의 불공정한 수입에 의한 경우나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구제해 주는 산업 피해구제제도가 발전되었으나,
 - 개발도상국에서는 유망·유치산업의 보호, 국제수지 방어 등을 목적으로 주로 사전적 수입관리제도에 의존하여 왔다.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 수입관리제도로서 긴급관세와 조정관세 등 관세조치와 수입선 다양화제도, 수입감시제도 등 비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불공정거래(여기서는 덤핑수입·보조금 지급에 의한 수출국의 가격 조작을 말한다)에 대한 사후적인 피해구제제도로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등 관세조치도 일부 운용하여 왔다.

나. 무역위원회의 설립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도입

-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와 꾸준히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수입자유화율이 선진국수준에 이르렀으나, 각종 수입관리제도의 적절한 이용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또는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는 매우 경미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가 개발도상국을 점차 탈피함에 따라 선진 각국으로부터 우리의 국내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증대되었으며 그 요구대상도 확대된 반면,

-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상승에 따라 '90. 1월부터 국제수지협의대상국(BOP) 제외와 함께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던 수단, 즉 그 법적 근거나 운영 절차면에서 국제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수입감시제도 ('89. 1 폐지) 등의 수입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향후 수입의 증대는 필연적이라 생각되며 그로 인한 산업의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제정 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동제도의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는 이해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사 및 구제조치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합의기구에 의한 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 무역위원회에 의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종전의 행정적인 수입관리 제도와는 달리 그 적용요건, 신청 및 조사절차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전담할 무역조사실을 설치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하여 있으면서도 수입의 급증 또는 수입과다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선진적이며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피해구제 신청요건 및 조사절차

가. 신청요건

○ 대외무역법 제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

건은 “특정한 물품 등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당해 이해관계자가 무역위원회에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우선 요약할 수 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누가”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고 구체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첫째, “특정한 물품 등의 수입급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급증한 경우를 뜻하나,

- 이외에도 특정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보호되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입, 공정한 상관습에 반하는 물품의 수입 등 불공정한 수입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또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서비스 공급의 급증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 최근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지적소유권 보호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 둘째 “수입급증으로 인하여”라고 한 것은 피해발생시 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 못지 않게 수입이 그 요인이 되어야 함을 뜻하며,

○ 셋째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란 “동종의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최근 대외무역법 개정시에 반영된 개념으로 생산시설의 상당한 유 휴, 합리적인 이윤 수준에서의 공장가동 불능, 상당한 실업의 발생 등 피해가 현존하거나, 판매의 감소, 재고의 증가 및 생산 . 이윤 . 고용의 하락 등으로 장래에 피해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로서, 제정 당시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한 것보다는 엄격하게 해석 · 운용되고 있다.

○ 넷째 “당해 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신청자격은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뜻하며,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64조에서

-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서비스 공급액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30% 이상인 생산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당해 국내 산업의 생산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
-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와 지적소유권 침해 등 불공정수입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내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자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자, 수입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계열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 서비스의 공급자 및 당해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절차

○ 산업피해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 증빙자료로는 당해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 종류, 당해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수요자의 현황과 생산, 수입실적, 당해 국내산업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현황, 산업지원관계 법령에 의한 지원현황, 요청하고자 하는 구제조치의 내용, 기간 등으로,

- 무역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단 구성·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당해 물품의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질문서 배부·현지사실이나 함께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조사단을 교역상대국에 파견하여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 또한 이해관계인도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피해유무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

○ 무역위원회는 당해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와 인지한 사실을 산업피해조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제출된 서류 중 신청인이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되지 아니함을 참고하여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조사단은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변호사·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자, 기타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조사단의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 수입수량 또는 서비스공급의 증가추이 및 그 요인

- 특정한 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것으로 우려되는 사항과 그 정도

- 당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의 정도
-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과 당해 조치가 수출·관련산업·소비자의 이익 및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 등의 침해사실 여부 및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 등이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20일의 기간 내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조사기간중에도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나 외국의 주요 생산자·수출자·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협회와 조합이 수출의 감소제의를 하고 신청인이 그 제의를 수락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도록 하고 있다.

3. 피해판정과 구제조치

가. 피해판정

○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유무 결정시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복잡한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 수입수량 또는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 공장폐쇄를 포함한 국내산업의 생산설비의 상당한 유 휴여부, 상당수 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 국내생산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국내산업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등 실질적인 피해유무
- 국내산업에 있어서 판매·시장점유율 및 가동률의 감소 또는 재고의 증가여부, 국내산업의 생산·이윤·고용의 감소 또는 임금의 인하 추세 여부 등 실질적인 피해 우려 유무

-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지적소유권 침해 등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감소, 손실의 발생 또는 그 우려 여부

- 당해 국내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 및 관련 산업과의 관계, 국내물가 및 소비자 이익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통상관계,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 등

○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며, 이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원한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나. 구제조치

○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 피해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당해 국내산업과 관련 있는 협회 조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구제조치를 하여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구제조치로는

-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 등에 관한 제한
- 관세율의 조정 외에도
-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으로
 -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또는 업종전환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의 지원 또는 세제상의 지원
 - 당해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 훈련
 - 기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등이 있으며,
- 또 조사대상인 산업의 업종에 대한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
- 특정물품 또는 특정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중지 또는 금지

- 그리고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체결의 권고 특정한 물품의 국내실수요자 또는 국내실수요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과 국내생산자 또는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 간의 일정수준의 국산품을 구매하는 협약체결의 권고
 - 교역상대국정부와 특정물품의 수입 등을 제한하는 등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협약체결의 권고
 -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 등도 활용할 수 있다.

○ 상공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를 건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상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당해 구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이해 당사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구제조치를 하게 되며,
- 구제조치의 대상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구제조치 기간중에도 그 구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해제되는 등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때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잠정조치 및 연례검토

○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이라도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해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 등에 관한 제한, 특정물품 또는 특정 무역업자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 등의 구제조치

- 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잠정조치는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 당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상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구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무역위원회는 구제조치 건의 후 상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 구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매년 검토하여 당해 구제조치의 기간의 연장 또는 구제조치의 변경 및 해제 등을 상공부장관에게 전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연례 검토는 상공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구제조치를 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고, 연례 검토결과 구제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의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또한 무역위원회가 연례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피해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광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수입실적이나 국내산업의 생산동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무역위원회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역할 증대

가. 무역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준독립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내에 무역조사실을 두고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구제조치방안 검토 및 국제무역제도에 관한 연구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 및 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중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

이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나.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역할증대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운용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관계로 모든 경제현안을 수출위주로 관련지어 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그것은 과거 몇 년간의 경제호황은 수출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며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 분석에는 수출 못지 않게 중요한 수입이라는 변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간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적절한 수입관리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며,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의 악화 현상은 수출의 부진만이 원인이 아니라 수입의 급격한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말로 수입자유화와 그동안 자제되어 왔던 욕구 분출로 인하여 날로 급증하는 수입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부양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수입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다 하여 약속한 현재 추진중인 대외개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는 없으며 올해부터 GATT의 국제수지 협의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금까지 GATT하에서도 국제수지를 이유로 일방적인 수입제한이 가능했던 수입관리제도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하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수입개방의 추진과 더불어 수입으로 인한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계각층의 사전대책의 강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GATT와 선진국이 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행정적 수입규제를 취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